



◆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기업

'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'는 법인기업 보다 오히려 세무상 관리가 까다롭게 세 법이 강화되었으므로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이 세무상 관리비용의 절감이나 절 세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 기준



성실신고 확인제도란? (고소득 자영업자 세무검증 제도)

- ◇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
- ▼ 적용 대상자: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최소 5억원 이상인 사업자 (해당업종별 수입 기준금액 확인)
- ♥ 취지: 매출누락, 가공경비, 업무무관 경비 등을 방지하여 소득의 투명성 확보

♦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 기준

업종	기준수입금액 (2023년)
농업·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 (상품중개업을 제외), 부동산매매업, 그 밖에 제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	15억원
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 ·원료재생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),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	7.5억원
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업(부동산매매업은 제외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사업시설 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 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예술·스 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5억원



ਂ 성실신고 확인 소요비용 세액공제

성실신고확인에 따른 혜택

- ✓ 의료비·교육비 지출액 세액공제
- ♥ 종합소득세신고기한 1개월 연장(6월말)



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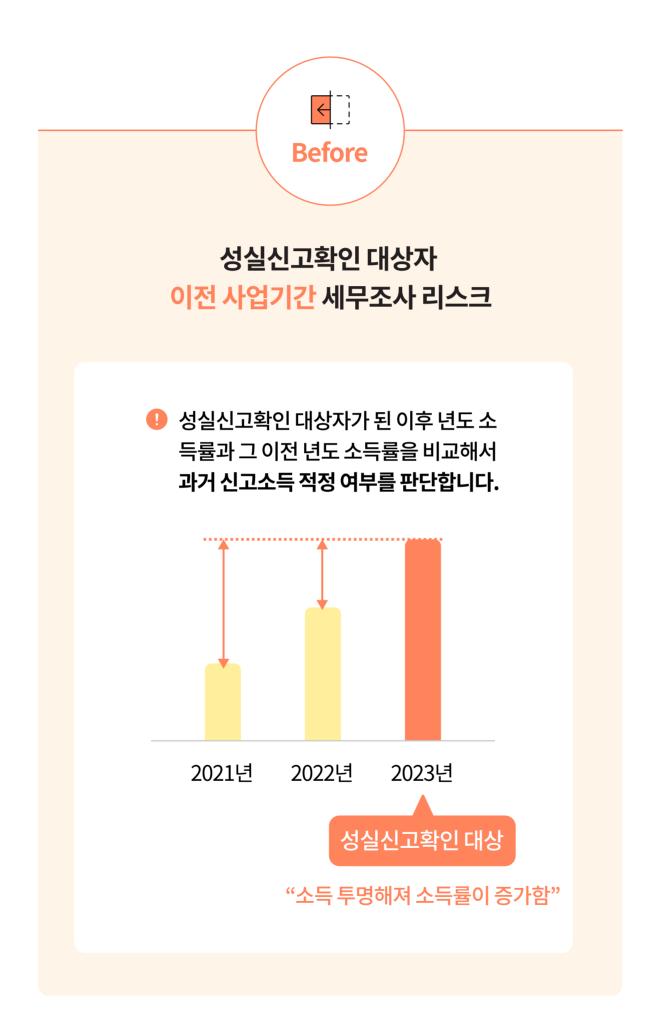
- 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
- ✓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
- ♥ 성실신고 확인자(세무사)에 대한 제재



◆ 법인전환법인의 성실신고확인

'성실신고확인'이라는 까다로운 세무상 의 절차를 피하고자 법인전환하는 개인 기업이 늘어나자 세무당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성실신고 확인을 받도 록 세법을 개정했습니다.

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기 전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





법인전환 후에도 계속해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

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 인전환을 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에도 3년 간 계속해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

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업

- 부동산임대 가족법인 (상시근로자 수 5인 미 만, 지배주주 50% 초과, 임대•이자•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% 이상)
-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 인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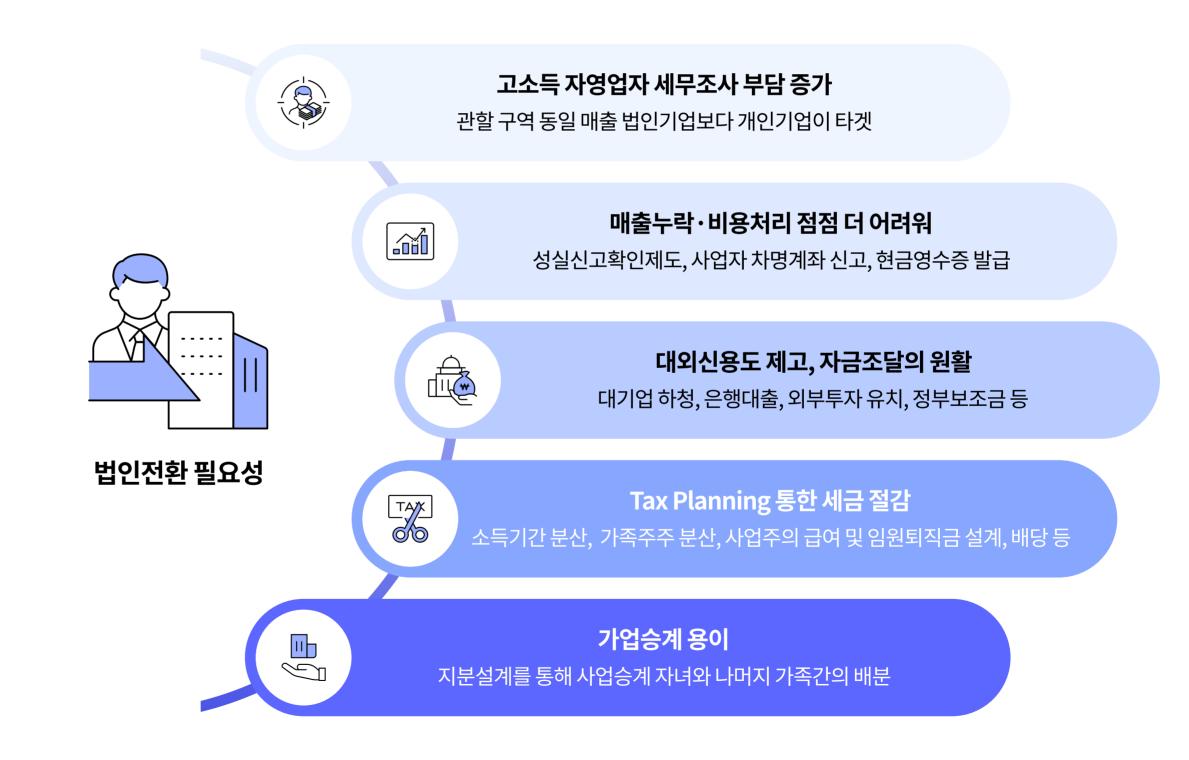
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필요성

◆ 법인전환이란

개인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과는 독립 된 법인이 경영상 권리,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 을 말합니다.

"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여부에 관한 결정은 당해 기업이 처한 기업환경과 경영의지를 감안한 고도의 경영판단이 필요한 종합적인 의사결정과정입니다.

따라서 기업의 규모, 조직 및 사업의 성격, 장래 발전성 등 기업환경과 향후 승계 계획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.





◆법인의 Tax Planning 효과

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각 종 규정 및 제도 등을 수립하고, 법인세 를 절감하면서 법인 내부의 부를 CEO 와 가족주주에게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최적의 절세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법인기업 활용시 절세가 가능한 이유

"법인 절세의 핵심은 소득분산"

법인 잉여금을 개인으로 이전시 자금인출 규모, 인출자, 인출방법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
구분	개인기업	법인기업	
소득종류	(개인) 사업소득	(법인) 법인세 (개인) 근로소득+퇴직소득+배당소득+양도소득	
귀속자	<mark>본인 단독</mark> 대표자=개인기업	본인, 배우자, 자녀 등 귀속자 분산 대표이사 ≠ 법인기업	
귀속시기	선택불가 (당해년도 즉시) 당해년도 소득금액 전액 소득세 과세 재투자를 위한 유보소득도 당해년도에 과세	선택가능 (기간 분산) 저율의 법인세 과세 후 재투자를 위한 잉여금으로 유보 가능	



개인기업 vs 법인기업

◆ 법인기업의 설립 및 청산

폐업신고 등 세무상 절차는 개인기업과 동일하지만 법인기업은 설립시와 마찬 가지로 상법상 해산등기 등 청산절차를 추가로 수행해야만 청산이 종결됩니다.





법인기업

⁽) 행정처리	 설립 간편 : 사업자등록 개인기업 = 사업주 = 경영자 의사결정 신속 	 설립 복잡 : 법인설립등기 → 사업자등록 운영시도 변경등기 등 행정 처리 부담 법인기업 ≠ 사업주 ≠ 경영자 의사결정 복잡 : 주주총회, 이사회
기업공개	기업주 활동의 자유 사업·자금운영 비밀유지 가능	 사업·자금운영 공개:재무제표 공시 (외감기업) 법률상 규제사항 증가: 상법상 규제 대상
(<u>TAX</u>) 세금부담	 경영·경영자 인건비: 경비 인정 안됨 세율: 6% ~ 45%(8단계 초과 누진) 이익금 사용: 자유로움 	 경영자 인건비: 급여·배당·퇴직금 수령 가능 세율: 9% ~ 24%(4단계 초과 누진) 이익금 사용: 급여·배당 등의 절차 필요
승계	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명의 변경 불가 사업체 사전 승계 어려움 	 재산이전 간편: 주식 양도 · 증여 주식 가치 평가 후 사전 증여/양도 가능
자금조달	 사업주 채무부담 : 무한책임 자본조달 방법 제한 : 차입금 대외신용도 취약 	 사업주 채무부담: 유한책임(지분 한도) 자본조달 용이: 주식(투자유치) 및 회사채 발행 대외신용도 우월
 기타	• 세무조사 가능성 높음(동일매출 법인대비)	 개인사업자 대비 세무조사 가능성 낮음 협력사 등록, 국책사업 지원



◆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

각 법인전환 방법의 소요비용 비교를 통 하여 소요비용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 하면 그 방법이 가장 적합한 법인전환방 법이 됩니다.

법인전환 방법

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선택

"종합적인 의사결정과정 필요"

조세지원을 받는 방법 (조특법 제 32조)

-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
- ② (세금감면)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
- ③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

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양도소득세, 취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조세지원을 받는 방법과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실무적으로는 조세 지원을 받지 않 는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.

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방법

- 4 일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
 - 포괄사업양수도
 - 일반(부분)사업양수도
 - 개인기업 병행

사업용 부동산이 없거나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법인에 해당 자산을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이때는 절차도 간단하면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일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법인전환 방법별 절차의 복잡성

현물출자 법인전환

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

일반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

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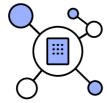
법인전환 방법별 조세지원의 효과

현물출자 법인전환

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

일반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

낮음



법인전환은 단순히 어떤 방법으로 전환하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.

더 중요한 것은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성장과 미래의 가업승계 계획까지 고려한 임원 및 주주구성, 배 당정책 수립, 정관 및 각종 사내 규정 제정 등이 함께 수반되어야 법인전환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.



◆조세특례 적용 법인전환 요건

① 업종 요건

소비성서비스업(호텔·여관·주점·기타 유흥업종)이 아닐 것. 사업의 동일성 유 지 필요

- ② **사업용 고정자산 요건** 부동산, 기계, 차량, 무형자산 등 업무무 관자산 제외
- ③ **신설법인 자본금** 개인기업 인수자산가액 이상 이어야 함

법인전환 유형별 조세

78	일반 사업양수도	조세특례 적용		
구분		현물출자 (조특법 32조)	사업양수도 (조특법32조)	중소기업간통합 (조특법 31조)
양도소득세	과세	이월과세	이월과세	이월과세
부동산·차량 취득세	과세	75% 감면	75% 감면	75% 감면
법인설립 등록세	과세	과세	과세	과세
부가가치세	과세 (포괄양수도 제외)	과세 제외	과세 제외	과세 제외
인지세/면허세	부담	부담	부담	부담
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(사업용 부동산 등기)	부담	면제	부담	면제 (신설 유형)
가업승계시 개인사업기간 인정	인정 안됨 (포괄양수도 제외)	인정	인정	인정
세액감면 잔존기간/미공제세액 이월	승계 안됨	승계	승계	승계
준비금/이월결손금	승계 안됨	승계 안됨	승계 안됨	승계 안됨
재고자산 소득세 (시가-취득가)	과세	과세	과세	과세

- 이월과세 사후관리 조세특례적용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 50%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
-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처분하면 감면 받은 세액 추징, 면제받은 취득세 20% 농특세는 납부해야 함
- 부동산 매매업,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적용 배제
-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사용 사업용 자산이어야 함



◆ 법인전화검토 6월이 좋은 이유

원칙적으로 1년 중 언제든 법인전환 시 기로 가능하지만,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 일치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 다.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신 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종 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또한 연도말 보다는 6월말이 더 좋은 이 유는 개인기업 소득과 법인의 소득을 분 산해서 세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 다.

법인전환 의사결정시 주요 점검사항



- 사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은 부동산 제외하고 차입금만 법인 이전 불가능
- 사업에 사용한 대표자 개인 신용대출은 법인 으로 이전 어려울 수 있음
- 차입금 법인 승계 여부 결정 위해 해당 금융기 관과의 사전 조율 반드시 필요



- 자산·부채 모두를 이전하는 포괄양수도 요건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인으로 넘기는 재고 자산,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해 매출로 보 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
- 당장 현금 부담은 발생하지만 향후 법인에서 매입 부가세로 환급



- 개인기업이 법인에 넘기는 재고자산에 대해 서는 당해년도 매출로 일시에 인식하게 됨
- 시가와 취득원가 차이가 큰 재고자산에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확인 필요



- 사업 양수도계약과 별도로, 개인기업 영업권 을 평가하여 양도 가능
- 법인은 영업권 감가상각을 통해해 비용처리, 개인기업 사업주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(단,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이전시에는 양도소득 세로 부과)



[참고] 소득세 vs 법인세

💠 소득세율

과세표준준	세율	누진공제
1,400만원 이하	6%	-
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	15%	126만원
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	24%	576만원
8,800만원 초과 ~ 1억 5천만원 이하	35%	1,544만원
1억 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	38%	1,994만원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	40%	2,594만원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42%	3,594만원
10억원 초과	45%	6,594만원

💠 법인세율
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
2억원 이하	9%	-
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	19%	2,000만원
200억원 초과 ~ 3,000억원 이하	21%	4억 2,000만원
3,000억원 초과	24%	94억 2,000만원

[※] 법인소유주택양도시 법인세(9~24%)에 추가 20%를 적용합니다.

❖ 근로소득공제

총급여	근로소득공제금액(공제한도 2,000만원)
500만원 이하	총급여 x 70%
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	350만원 + (총급여-500만원) x 40%
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	750만원 + (총급여 - 1,500만원) x 15%
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1,200만원 + (총급여 - 4,500만원) x 5%
1억원 초과	1,475만원 + (총급여 - 1억원) x 2%

💠 근로소득 세액공제

A.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

산출세액	공제세액	
130만원 이하	산출세액의 55%	
130만원 초과	71만 5천원+130만원 초과금액의 30%	

B. 세액공제 한도 (20만원 ~74만원)

총급여액	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
3,300만원 이하	74만원
3,300만원 초과 ~ 7,000만원 이하	74만원 –[(총급여 - 3,300만원)*0.8%], 최대 66만원
7,000만원 초과 ~ 1억 2천만원 이하	66만원 –[(총급여 - 7,300만원)*1/2], 최대 50만원
1억 2천천만원 초과	50만원 –[(총급여 - 1억 2천만원)*1/2], 최저 20만원



□원소득보상플랜

◆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

개인사업자 대표는 건강보험만 경비처 리 가능하고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 보험은 경비처리가 안됩니다.

다만 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은 경비처 리는 안되지만 '연금보험료'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로서 직장가 입자에 해당되며, 사업주 부담분은 전액 경비처리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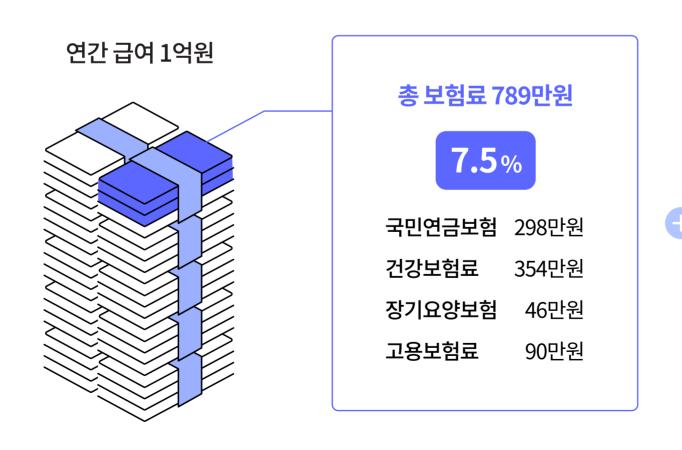
[참고]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

◇ 4대 사회보험료 요율 (2024.1.1 ~ 2024.6.30)

구	분	고용보험	산재보험	산재보험	건강보험1)
	사업주	1.15 ~ 1.75%	0.85~28.25%	4.5%	3.545%
부담요율	근로자	0.9%	-	4.5%	3.545%
	합계	2.05~2.65%	0.85~28.25%	9.0%	7.09%
니 스 인데	상한선	없음	없음	월 590만원	월 11,962만원
보수월액	하한선	없음	없음	월 37만원	월 27.9만원

주1) 장기요양보험료: 건강보험료 x 12.95% (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 0.9182% / 건강보험요율 7.09%)

❖ 연간 급여여 1억원 중 4대보험 부담 비중



급여소득 외 추가소득 건강보험료

월급 이외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임대소득의 **추가 소득이 연간 2,000만원 초과**하는 직장 인은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. (소득월액보험료 상한: 4,240,710원)

(예시) 배당소득 5,000만원 있을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포함) 240만원